

## 신탁계약서 변경비교표

변경 전	변경 후
<p><b>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</b></p> <p>①·② (생략)</p> <p>③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서 발행할 수 있는 수익증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~6. (생략)</p> <p>7. W클래스 수익증권 :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</p> <p>8. (생략)</p> <p>&lt;신설&gt;</p>	<p><b>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</b></p> <p>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서 발행할 수 있는 수익증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~6. (현행과 같음)</p> <p>7. W클래스 수익증권 :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 <b>및 특정금전신탁</b></p> <p>8. (현행과 같음)</p> <p><b><u>9. S클래스 :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경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</u></b></p>
<p><b>제10조(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)</b></p> <p>①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무액면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</p> <p>1.~8. (생략)</p> <p>&lt;신설&gt;</p> <p>②~⑤ (생략)</p>	<p><b>제10조(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)</b></p> <p>①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무액면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</p> <p>1.~8. (현행과 같음)</p> <p><b><u>9. S클래스 수익증권</u></b></p> <p>②~⑤ (현행과 같음)</p>
<p><b>제17조(투자대상자산 등)</b></p> <p>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.</p> <p>1.~6. (생략)</p> <p>7. 환매조건부 매도</p>	<p><b>제17조(투자대상자산 등)</b></p> <p>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.</p> <p>1.~6. (현행과 같음)</p> <p>7. 환매조건부 매도 <b>또는 매수</b></p>

<p>8.~10.(생략) ② (생략)</p>	<p>8.~10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<b>제24조의 3 (미국 국적의 비거주자에 대한 판매)</b> 이 투자신탁의 판매회사는 이 수익증권을 외국환거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로서 미국 국적인 자에게 <u>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취득을 권유하거나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집합투자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</u></p>	<p><b>제24조의 3 (미국 국적의 비거주자에 대한 판매)</b> 이 투자신탁의 판매회사는 외국환거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로서 미국 국적인 자에게 <u>이 수익증권을 판매할 수 없다.</u></p>
<p><b>제40조(보수)</b> ①·② (생략)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로 다음 각 목의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 재산의 연평균가액(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)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 1.~8. (생략) &lt;신설&gt;</p>	<p><b>제40조(보수)</b>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로 다음 각 목의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 재산의 연평균가액(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)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 1.~8. (현행과 같음) <b>9. S클래스 수익증권</b> <u>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7.5</u> <u>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3.5</u> <u>다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0.2</u> <u>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0.15</u></p>
<p><b>제41조(판매수수료)</b> ①·② (생략) &lt;신설&gt;</p>	<p><b>제41조(판매수수료)</b> ①·② (현행과 같음) <b>③ 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의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수익자로부터 후취판매수수료를 취득할 수 있다. 다만, 제34조 2항의 규정에 의해 이익분배금으로 매수한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,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“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”에서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 고객 등에 대하여 후취판매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.</b> <b>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후취판매수수료는 환</b></p>

	<p><u>매금액(수익증권 환매 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환매하는 수익증권의 좌수를 곱한 금액을 1,000으로 나눈 금액)에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(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 시 적용되는 당해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)별로 다음 각 호의 종류 수익증권별 후취판매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.</u></p> <p><u>1. S클래스 수익증권 : 3년 미만 환매 시, 환매금액의 100분의 0.15 이내</u></p> <p><u>⑤ 제4항의 후취판매수수료율은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다.</u></p>
<p>&lt;신 설&gt;</p>	<p><u>부 칙</u></p> <p><u>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14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.</u></p>